

## 직원징계위원회 규정

제 정 : 2004. 8. 1.  
개 정 : 2018. 11. 27.  
개 정 : 2020. 10. 20.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제71조에 의거 직원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원징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기획관리처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8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외부인인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, 외부위원의 경우 2인 이내로 한다.  
② 위원장은 기획관리처장이 되며,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 
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3조(제척사유)** 위원회 위원은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징계사건의 심리에 참여하지 못한다.

### 제2장 징계의 절차

**제4조(징계요구)** 총장은 직원 중에 직원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서(별지서식 1호)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자에 대하여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5조(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)** ①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,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  
②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(별지서식 2호)에 의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징계의결의 기한)** 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을 때에는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**제7조(정상 참작)**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, 근무성적, 공적 내용, 개전의 정, 징계요구의 내용,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.

- 제8조(심문과 진술권)**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할 수 있고,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.
- ③ 징계대상자는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- 제9조(징계의결)**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징계의결 중 중징계에서 경징계 순으로 찬성자수를 더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는 시점에서 그중 가장 경미한 징계에 해당하는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.
-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학식,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의뢰 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(별지서식 3호)를 작성하며 사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,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의결통보 및 집행)** ① 징계위원장은 징계의결을 한 후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
- ② 총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- ③ 징계의결의 집행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(별지서식 4호)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재심 위원회

- 제11조(재심위원회 설치)** ①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, 기타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에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.
- ② 삭제
- ③ 삭제

**제12조(재심의 청구)** 징계대상자가 이 위원회의 징계처분,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**제13조(재심위원회의 의결 및 처리)** 삭제

**제14조(징계처분의 경정)** 총장은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한 재심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이미 행한 징계처분을 지체 없이 경정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보 칙

제15조(세부사항)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 내  
규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서식 1호)

### 징계의결요구서

인적 사항	성명		직명		소속	
			생년월일		재직기간	
	본직					
	현주소					
징계 사유						
징계의결 요구자의 의견						

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함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금강대학교총장

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

(별지서식 2호)

**출석통지서**

인 사 적 향	성 명		소 속	
			직 명	
	본 적			
	현 주소			
출석이유				
출석일자	20 년 월 일 시			
출석장소				
기 타				

직원징계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.  
 20 년 월 일  
 통지자 (인)

**출석통지서**

인 사 적 향	성 명		소 속	
			직 명	
	본 적			
	현 주소			
출석이유				
출석일자	20 년 월 일 시			
출석장소				
기 타				

직원징계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.  
 20 년 월 일  
 통지자 (인)

(별지서식 3호)

### 징 계 의 결 서

징 협 의 인 사	계 자 적 항	직	명	성명	소	속
의 주	결 문					
사 유						

20 년 월 일

징계위원회 위원장	(인)	위 원	(인)
위 원	(인)	”	(인)
”	(인)	”	(인)
”	(인)	”	(인)
”	(인)		

(별지서식 4호)

### 징계처분사유설명서

직	명	성	명	소	속
주	문				
사	유				

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.

20   년   월   일

금강대학교 총장 귀하